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 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T. 044-200-7773 F. 044-200-7949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종? 2종? 3종? 헷갈리는 세척제 용도,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23년 7월부터 세척제 표시방법 변경



'23년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 '종'에서 '용도'로 변경됩니다!

세척제 사용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 에서 '세척용도'로 유형 개정



(현행) 1종/2종/3종 → (변경) 세척유형

※ 유형명칭 표시는 미리 적용하여 표시 가능하며,
*'23년 7월부터 전산시스템(식품안전나라, UNIPASS 등)에 변경되는 유형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



앞으로 세척제에는 '○'종이 아닌 '용도'로 표시해주세요~!

현행 유형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사용범위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 (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사용범위 예시	과일, 채소	컵, 그릇, 숟가락, 젓병, 그릴, 용기 *자동식기세척기 및 오븐 내부를 세척하는 제품은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음	커피머신, 제빙기, 맥주 발효탱크 내부
변경 유형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위생용품 영업자는 제품명이 세척제 유형과 용도가 일치하도록 개선

예시

현재, 유형 '1종 세척제', 제품명 '1종 젖병세척제'인 제품

→ 유형을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한다면? **제품명**을 **유형과 일치하도록 변경('젖병세척제' 문구 삭제!)**
→ **제품명 'O종'**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제품명과 유형 모두 '1종' 변경!)**
→ **제품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젖병은 식품용 용기에 해당되므로 세척제 유형을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로 **변경**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영업자는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개선해주셔야 합니다. ('23. 7. 1 시행)

-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보고서상 'O종' 제품명에서 'O종' 삭제하고 용도에 따른 유형과 제품명이 일치하도록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 필요
- 위생용품 수입업체는 세척제 유형과 제품명을 일치시켜 한글표시사항 부착 후 수입신고
- 제품명과 유형 표시가 명확한 경우, 사용 범위 내에서 용도 추가 표시·광고 허용
  (예, 제품명 'OO과일세제', 유형 '과일채소용 세척제'인 경우 식기 세척도 가능하다는 추가 문구 허용)

유형을 변경할 경우, 유형에 따른 사용 가능한 세척제 성분임을 확인!



앞으로 누구나 세척제의 용도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품목제조보고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에 문의하세요.